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08 | 2023.11.07. (2023.10.30~11.05)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2. 상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1]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0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10.30~11.05)

【정부의 주요 정책】

지난주 발표된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 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통합 수립하여 확정 발표**한 것입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대 실천과제 중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의 5대 전략에 기반하여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미래혁신을 이끌 초격차 기술 확보전략으로 ‘인공지능·첨단바이오 전략로드맵’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기술분야간 연계·융합과 도전적 기술확보를 통한 세계적 경쟁 진입에 주안점을 두고, 미래혁신의 핵심이 되는 2개 분야에 대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가임무와 이를 위한 핵심 기술목표 및 투자·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기존 대비 데이터 및 전력소모량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 학습모델 개발, 상식추론·멀티모달 등 인공지능지능 기술 (AGI) 및 설명가능한 AI 등 혁신적인 원천기술 확보를 제시하고, 특히, 첨단바이오는 ‘디지털·바이오 융합을 통한 난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바이오제조 과정의 효율을 최대 10배 혁신하는 합성생물학 고도화와 함께, 한국인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난치병 치료를 위한 유전물질 전달기술 확보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자산관리회사가 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경우 자산관리회사 등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코로나19 비상시국 극복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규정된 대규모유통업자의 비용분담의무 예외사유인 자발성 요건과 차별성 요건을 완화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동 가이드라인은 한시적 운영을 예정하고 시행하였으나, 이후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의 요청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 기한을 연장(’23.12월)해 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의 가이드라인 운용 경과 등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현행 심사지침에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서도 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제출되었으며,

보험료 수입 감소를 막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 조정하고, 음반 및 음악영상물 등 음악 관련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영상콘텐츠와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현행 2027년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연구실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의원 등 11인)**」 등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이번 주부터는 각 상임위별 소관 부처의 2024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될 될 예정이며, **과방위에서는 11/7(화) 10시,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민)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6
- 미래혁신을 이끌 초격차 기술 확보전략, ‘인공지능·첨단바이오 전략로드맵’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8
- 합성생물학 기술선도국 도약을 위한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및 확산전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 지방투자 핵심거점으로 “기회발전특구” 본격 육성 (산업통상자원부) 14
-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지속적으로 제고 (금융위원회) 15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7
- 방위사업법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17
- 대외무역법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8
- 상표법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8
- 전기사업법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18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9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9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0
-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0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환경부) 21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2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3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3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4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5
-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26
- 대규모 유통업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2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29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29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등 12인)	30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31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31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3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3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32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33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1인)	33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등 10인)	3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등 11인)	34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1인)	34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35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	36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37
2. 상임위원회	37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1]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0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0.30~11.05) [바로가기](#)

- 월간 노동 뉴스레터
- 동일한 업종이라도 근로자성 유무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
- 주주경영권분쟁팀 뉴스레터 (경영권 분쟁의 신호탄, 주주제안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 NFT 프로젝트의 운영주체와 참여 아티스트를 상대로 한 화이트리스트(Whitelist) 대상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중국 <데이터 경외이전의 규범화와 촉진에 관한 규정(의견수렴안)> 공포 및 그 시사점
-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 논의 동향 및 시사점
- 지방보조금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기간, 범위 및 기타 제재 규정 등 구체화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2023-11-01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023.10.23.)과 국무회의 심의(2023.10.30.)를 거쳐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 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통합 수립하여 확정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금번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대 실천과제 중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함

특히,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의 5대 전략*에 기반하여 시·도와 중앙부처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편제를 구성함. 모든 시·도와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계획 검토 협의회, 지역정책과제 관계기관 회의,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다수 개최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 비전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함

종합계획 5대 전략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지역발전 선도 및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양으로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

②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 지역 어디서나 질 좋은 교육기회 제공,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 구현

③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 기회발전특구의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에 혁신성장 거점 구축

④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 지방의 디지털·첨단산업·보건의료 혁신으로 지역균형발전 해법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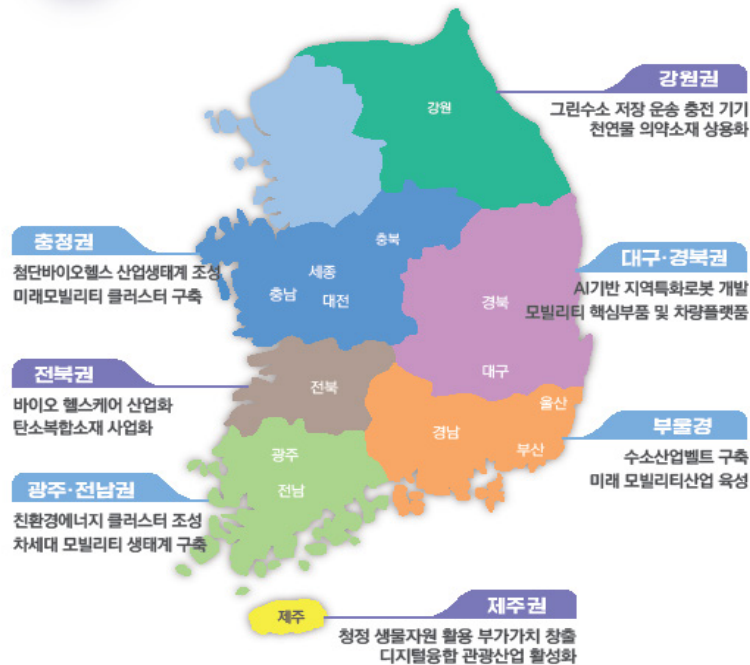
⑤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 '생활인구 늘리기'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 대응

5대 전략	22대 핵심과제	주관 부처
I.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1.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행안부
	2.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행안부·기재부
	3.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행안부
	4.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행안부
	5. 지방의 책임성 확보	행안부
II. 인재를 기르는 답 대한 교육개혁	1.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 기회 제공	교육부
	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교육부·중기부
	3.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교육부·행안부
III. 일자리 늘리는 창 조적 혁신성장	1.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	산업부
	2. 지역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조성	국토부
	3. 지역특화형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산업부·고용부
	4. 글로벌 선도형 지역과학기술 진흥	과기부
	5. 지역 디지털 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과기부·산업부·행안부
	6. 지역 맞춤형 창업 및 혁신생태계 조성	중기부
IV. 개성을 살리는 주 도적 특화발전	1.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산업부·중기부
	2.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 관광 육성	문화부·해수부
	3.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	국토부·해수부
	4. 지역주도의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	농림부·해수부
V.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1.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	행안부·농림부·해수부
	2.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생활여건 개선	국토부
	3. 삶의 질 높이는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	복지부·행안부
	4. 지역 환경·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환경부·산림청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

4대 초광역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3대 특별자치권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혁신을 이끄는 초격차 기술 확보전략,
‘인공지능·첨단바이오 전략로드맵’ 수립

2023-10-3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전략기술 특위’를 통해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미래혁신 분야의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심의·의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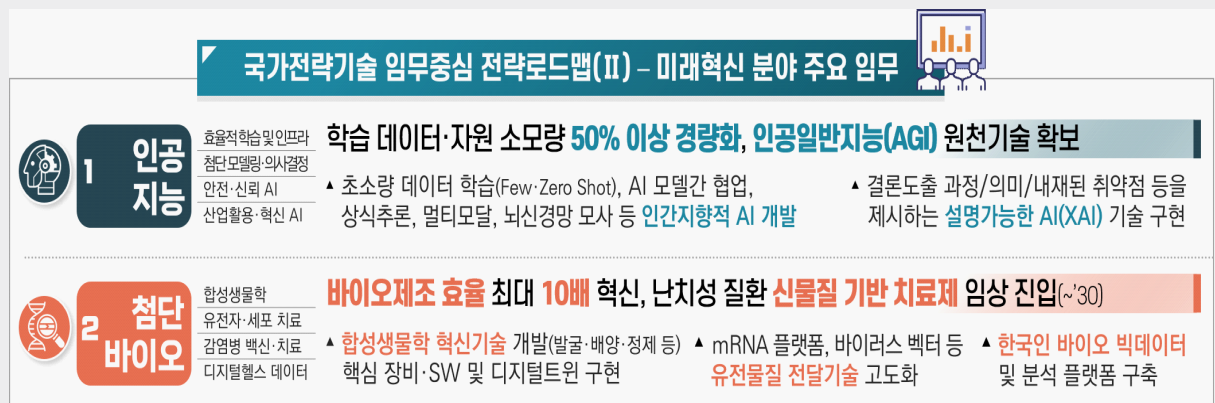
정부는 기술분야간 연계·융합과 도전적 기술확보를 통한 세계적 경쟁 진입에 주안점을 두고, 미래혁신의 핵심이 되는 2개 분야에 대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가임무와 이를 위한 핵심 기술목표 및 투자·정책방향을 제시함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기존 대비 데이터 및 전력소모량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 학습모델 개발, 상식추론·멀티모달 등 인공지능기능 기술 (AGI) 및 설명가능한 AI 등 혁신적인 원천기술 확보를 제시함

특히, 첨단바이오는 ‘디지털·바이오 융합을 통한 난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바이오제조 과정의 효율을 최대 10배 혁신하는 합성생물학 고도화와 함께, 한국인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난치병 치료를 위한 유전물질 전달기술 확보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함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의 본격 시행에 발맞춰 전략로드맵의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집중 지원해나갈 예정임

<인공지능·첨단바이오 분야 전략로드맵 주요 임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성생물학 기술선도국 도약을 위한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및 확산전략」 발표
 -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인공세포 제작을 위한 6대 분야
 핵심기술 중점 확보

2023-10-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제조 핵심기술인 합성생물학 기술선도국 도약을 위한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및 확산전략」을 발표함. 이번 전략은 작년 12월에 발표한 「국가 합성생물학 육성전략」의 후속조치로, 합성생물학 기술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함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에 공학적인 기술개념을 도입하여 DNA, 단백질, 인공세포 등 생명시스템을 설계·제작하는 기술임. 2003년 인간 유전체 지도가 완성된 후 20년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과 접목된 합성생물학은 유전체를 해독(read)하는 수준에서 인공세포를 합성(write)하는 수준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음

* 미생물 존재 발견(1861) → DNA 이중나선 발견(1953) → 인간 단일게놈 참조지도완성(2003) → 유전자가위기술 개발(2012) → 세포 분열이 가능한 단세포 합성(2021)

고도화된 합성생물학 기술은 바이오연구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낮은 속도와 불확실성의 한계를 극복 가능하게 하고, 제약·에너지·화학·농업 등 바이오를 넘어 전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기술로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합성생물학을 국가 전략기술로 중점 지원하는 한편, 기술 블록화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새 정부 국정과제로 합성생물학을 포함한 ‘디지털바이오 육성’을 추진 중이며, 12대 전략기술의 세부 중점기술로 합성생물학을 선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작년 12월 발표한 「국가 합성생물학 육성전략」에 이어, 이번에 발표하는 전략은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및 산업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등 우리나라가 합성생물학 기술 선도국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동 전략은 합성생물학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여 수립됨

합성생물학은 산업적인 가치가 큰 기술로,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합성생물학 기술 활용이 가속화되고 있음. 모더나社は 합성생물학 기업인 긴코社(Ginkgo Bioworks)와 협력하여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기업들도 합성생물학 기술을 도입하여 친환경 신소재를 개발하는 등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이번 전략에서 과기정통부는 ‘2030년 석유기반 제조산업 30%의 바이오전환’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핵심기술 R&D 지원, 합성생물학 활용 선도프로젝트 추진, 바이오파운드리 등 핵심 인프라 조성, 석·박사급 고급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강화 등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함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및 확산전략」의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합성생물학 기술역량을 세계 최고(미국) 대비 75%('20년)에서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임무지향적 연구개발’을 본격 추진
 -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합성생물학 6대 분야 17대 세부기술을 분류하였으며, 기술수준에 따라 기초·원천연구에서 응용·개발단계까지 전략적인 R&D를 지원
 - 특히 세포개량 및 대사최적화 기술 등 우리의 강점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합성생물학 6대 분야 핵심기술 >



② 합성생물학을 활용하여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고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선도프로젝트도 추진

- 선도프로젝트는 ▲의료분야 혁신, ▲오염물질 분해·대체, ▲고부가 소재 생산 등 3개 분야에서 9개 프로젝트 추진

< 선도프로젝트 주요 사례 >

- **(항체 설계·생산)** 새로운 바이러스(항원)의 항체를 인공지능으로 신속하게 설계하고, 복합기능 항체를 생산하는 혁신적인 동물세포 개발 → 항체 생산효율 10배 향상
- **(온실가스 전환)** 유전자 편집된 미생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CO₂/CH₄/CO)를 산업원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산업적으로 활용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
- **(플라스틱 분해)** 난분해 플라스틱(PE, PVC, PS 등)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탐지하는 단백질 바이오센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신규 미생물 발굴
- **(광합성 효율 향상)** 육종(교배)으로는 더 이상 향상이 어려운 광합성 효율을 유전자 설계 및 편집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 대비 50% 향상
* 현재 식물의 태양에너지 약 4.6% 활용에서 7% 활용으로 향상

③ 합성생물학의 핵심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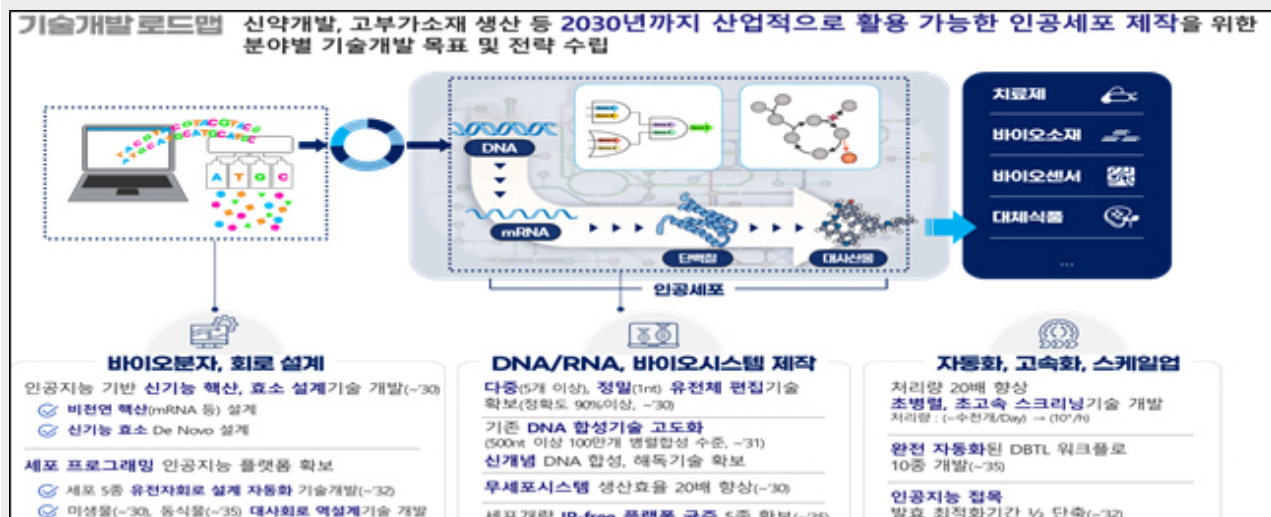
- 바이오파운드리는 인공세포 설계부터 제작, 테스트까지 합성생물학 전 과정을 자동화·고속화하는 인프라로, 바이오 기반 제조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필수요소임
-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사업(과기정통부, 산업부 공동 추진) 등을 통해 국가 주도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우선 구축하고, 산업별로 전문화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분야별 특화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
- 민간으로 확산하여 2030년까지 바이오제조 혁신 인프라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④ 세계 최고 기관과의 국제협력 활성화, 핵심인력 양성 등 글로벌 경쟁력 있는 합성생물학 혁신 생태계 조성
- 합성생물학은 미국, 영국 등 기술 선도국에서 한국과의 국제협력에 적극적인 분야인 만큼, 글로벌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
 - 바이오 전문성과 인공지능, 공학 지식을 겸비한 양손잡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바이오파운드리 전문인력 등 바이오제조 인력 육성을 위해 관계 부처, 산업계와 협력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및 확산전략」비전 및 추진과제>



<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주요 내용 >



< 9대 선도프로젝트 개요 >

합성생물학을 실제 산업에 적용하여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9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산자부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할 예정임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거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대상임.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 상한(광역시:150만 평, 도:200만 평)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됨

- ① (규제 특례)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 도입
- ② (세제지원)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는 투자자원 마련, 투자이행, 경영활동 등 단계별로 세제 혜택
 - * 수도권 사업장 양도세 과세이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지방 이전 창업 시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 5년간 50%) 감면(비수도권 특구),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75%)·재산세(5년간 75%) 감면(비수도권 특구),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 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등
- ③ (재정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p 더하고, 기업당 국비 지원 한도를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
- ④ (근로자 거주여건 개선) 특구 내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혜택,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 등 추진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세제 지원	1.~2. 소득 법인세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5년 100% + 2년 50% 감면)
	3.~4. 취득세 · 재산세	•특구로 기업 이전 시 *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 특구 내 창업 시 - (비수도권)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3년 100% + 2년 50% 감면 • 공장 신 · 증설 시 - (비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75%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35% 감면
	5.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100% 감면
	6. 상속세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② 재정 금융 지원	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자율계정 확대를 통해 특구 인프라 확충 등 지원
	8. 기회발전특구 펀드	•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 기업·인프라 투자 활성화 • 펀드에 일정기간(10년) 이상 투자시 이자 배당소득 세제혜택(분리과세 9%)
	9. 저리금융	• 저리 용자 상품개발을 통한 특구기업 지원
	10.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 (지원비율 5%p 가산, 기업당 국비지원 한도 100억원 → 200억원)
③ 규제 특례	11. 3중 세트	• 규제혁신 3중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
	12. 규제특례제도	•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여 신청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의결 후 해당규제 특례 부여
	13. 주택 특별공급	•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10%)
④ 정주 여건 개선	14. 주택 양도세	•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15.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교 설립지원 •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우대

금융위원회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지속적으로 제고
 -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

2023-11-01

금융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함.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별 대손충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지난 4월 美 SVB사태 등을 계기로 은행권 전반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국내은행은 회계기준에 따라 향후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왔으나,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이 미국·유럽 등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총여신 대비 충당금적립률('23.6말 기준, %) : (한국)0.93 (유럽)1.51 (미국)1.67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고자 지난 3월 16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옴. 금번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및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여 은행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손준비금 추가적립 유도**

- 종전에는 경기순응성 완화, 미래불확실성 대응 등을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그간 필요시 금감원이 은행권에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등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해 옴
- 앞으로는 은행이 보유중인 잠재부실여신(요주의 등)의 부실화를 가정할 때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총당금·준비금 규모에 비해 현재 총당금·준비금 적립규모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가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됨

<표>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비교

	적립기준	회계처리	자 본
대손충당금	회계기준(IFRS9)	비용에 포함, 당기순이익 차감	제 외
대손준비금	은행업감독규정	이익잉여금(내부유보), 당기순이익 영향 없음	포 함

②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은행별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향후 예상손실 수준에 걸맞는 대손충당금 적립 유도**

- 회계기준(IFRS9)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기반으로 예상손실을 추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음
- 그간 은행들은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의 낮은 부도율을 기초로 예상손실을 산출하는 등 미래전망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최근에는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코로나19 이후 예상손실 산출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도 있음

- ☐ (EBA(유럽은행감독청)) 코로나19 정책효과 등으로 예상손실이 크게 감소한 경우 부도율, 손실율 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22.6, Principles on representativeness of COVID-19 impacted IRB relevant data)
- ☐ (한국은행)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성장률이 큰 폭 하락했음에도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부실은 오히려 축소되었으며, 코로나19 정책효과 통제시 은행의 예상손실은 1.6배('20~'21년 평균 대비) 증가 추정('22.6, 금융안정보고서)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05-01 시행 예정 다만, 제5조제3항, 제12조의3 및 제24조제2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미리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 간 또는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동·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융합연구 사업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5조제3항, 제12조의3 신설, 제21조제4호, 제21조의2 신설, 제24조제2항제6호 등)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24-05-01 시행 예정
----------------	--------------	------------------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서 계약의 특수성·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도록 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해서는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종류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위사업계약 이행 지체의 원인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정부 또는 하도급자에게 함께 있는 경우 등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제3조제13호 신설, 제3조제17호 신설, 제6조제1항제2호, 제6조제3항, 제9조제2항제12호, 제43조제2항제2호 등)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2024-05-01 시행 예정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제33조의2제4항)

산업통상자원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2024-05-01 시행 예정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상표등록의 거절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를 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등에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나 출원 시의 특례 취지 및 그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출원에 대해서도 그 주장 및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대체 요건을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를 포함하고 있을 때만 인정하던 것을 지정상품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는 부분대체를 도입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제7호, 제35조제6항 신설, 제44조제3항, 제45조제2항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24-05-01 시행 예정
법률 제19439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2호의
2, 제12호의3, 제12호의10부터
제12호의13까지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4
일부터 시행 예정

전기판매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추가하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정의를 규정하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조제9호, 제12호의11 신설, 제14조, 제16조의2제3항제2호다목 등)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25-11-01 시행 예정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5년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제5조 및 제9조)
- ② 담배의 제조자 등이 2년마다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결과서 등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검사결과서 등을 송부하도록 함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 (제14조)
- ④ 유해성분 검사를 거짓으로 의뢰한 자, 검사결과서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24조)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11-01 시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지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일정한 수탁·위탁거래 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1조의3 신설)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0.30. ~12.11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9597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대체 자료의 범위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무상저작물 등록시 창작에 참여한 자 표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법 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등을 위한 대체자료 범위 규정 (안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의3)**
 - 법 개정에서 따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본인과 보호인 등이 장애인 개인의 이용을 위해 저작권 문제없이 '복제할 수 있는 (대체)자료' 범위 구체화
- ② **업무상저작물 등록 시 업무상창작에 참여한 자 표시 근거 마련 (안 제24조, 제27조)**
 - (현행) 법 제9조에 따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법인등으로 등록 → (개정안) 업무상 창작에 기여한 자의 창작의욕 고취 및 경력 관리 등을 위해 등록 시 참여한 자도 표시
 - ※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개정을 통해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개정 (~'24.상)
- ③ **실연자 방송보상금 금액 결정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신청 절차 규정 마련 (안 제38조의2)**
 - 법 제75조제4항에서 위임한 조정 신청 절차 관련 규정 신설
- ④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저작권 보상금액·기준 결정을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일원화 (안 제68조 일부)**
 - 최근 복잡·다양해진 권리관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보상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위를 통한 저작권 보상기준 결정으로 일원화
- ⑤ **저작권 대리중개업 관련 업무(신고 및 변경 접수, 전년도 사업실적보고) 일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탁 (안 제68조 일부)**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전화: 044-203-2476, 팩스: 044-203-3466)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10.30. ~12.11
---------	------------------	-----------------------

순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수수료를 할인하고, 등록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까지로 확대하는 등 저작권 등록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등록 신청시 수수료 면제 관련 첨부서류 등 (안 제6조제2항제8호, 별지 제3호서식 등)**
 - 등록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함에 따라, 이에 맞게 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의 종류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② **등록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안 제23조 제2항)**
 -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창작자가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저작권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 ③ **순차적 저작물 추가 등록 신청 할인 근거 마련 (안 별표)**
 - 웹툰이나 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순차적 저작물)의 경우 추가 등록을 할 때마다 추가로 등록 수수료가 발생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 과도함
- ④ **등록 신청 처리기간 연장 (안 별지 제3호서식 등)**
 - 저작권 등록 건수는 200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여 등록 신청을 4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도달
- ⑤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 표시 (안 별지 제4호서식 및 제4호의2서식)**
 - 무상저작물의 창작에 참여한 법인 등의 종사자(직원 등)의 경력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시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http://www.korea.go.kr) (전화: 044-203-2476, 팩스: 044-203-3466)

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2023.10.31.
~11.21.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을 정하고,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법률의 제명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제명)**
- ②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순환원료를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으로 만드는 활동, 분리·선별하는 활동 등으로 함 (안 제2조)**

- ③ 순환경제 목표 설정·관리를 위해 시·도의 제출항목을 정하고 사업자의 업종과 규모, 목표 설정 및 이행 방법을 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 ④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등의 출고·수입량 또는 생산·판매량과 폐기물이 되는 경우의 순환이용 현황 및 순환이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도록 선정기준을 정함 (안 제11조)
- ⑤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는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당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의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 발급 절차 및 방법을 정함 (안 제19조)

※ 문의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화: 044-201-7347, 팩스: 044-201-7351)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1.03.
~12.13.

민간 비영리 단체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 중인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업무와 동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과 관련된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의 공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화학물질확인 등 업무 위탁기관 변경 (안 제22조 제3항 내지 제4항)

※ 문의처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전화: 044-201-6779, 팩스: 044-201-6786)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11.03.
~12.13.

민간 비영리 단체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 중인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업무와 동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과 관련된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필요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화학물질확인 등 업무 위탁기관 변경 (안 제22조제3항 내지 제4항)

※ 문의처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전화: 044-201-6779, 팩스: 044-201-6786)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1.03.
~2024.01.02.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EU)에서는 다른 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완료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재활용 화학물질은 등록을 면제하고 있는 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이 다른 사업자가 등록을 완료한 물질과 동일한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확인 (안 제11조제1항제9호 신설)

※ 문의처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전화: 044-201-6779, 팩스 044-201-6786)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11.03.
~2024.01.0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생략 사유와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외 정부 등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생략 대상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까지 증명자료 제출이 요구되고 있는 바, **증명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구체화 (안 제5조제1항제5호)

※ 문의처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전화: 044-201-6779, 팩스 044-201-678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0.30.
~12.11.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안 제56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대상에 추가

②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안 별표 4)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 건설업 외 업종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일정 기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추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http://www.mw.go.kr) (전화: 044-202-8856, 팩스: 044-202-8092)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0.30.
~12.11.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등의 전문성·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9681호, 2023. 08. 16. 공포, 2024. 02. 17. 시행)됨

이에 따라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자산관리회사가 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경우 자산관리회사 등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상호의 제한 신설 (안 제3조)

-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를 의미하는 외국어문자 및 그 한글표기문자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②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도입 (안 제18조)

-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서 준법사항 및 직업윤리 사항과 부동산 시장 여건의 변화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③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비율, 방법 등 명시 (안 제22조의4 신설)

- 자산관리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초과하여 취득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요건 (안 제22조의5 신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회사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도록 함

⑤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대상 명시 (안 제34조제1항 신설)

-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겸영하여 관리하는 집합투자기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대상임을 명시함

⑥ 영업인가 취소 요건 합리화 (안 제43조의2제1항제1호)

- 자산관리회사 등이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영업인가 취소 대상에서 제외함

⑦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주회사 규정 적용 제외 보고 (안 제47조 신설)

- 부동산투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보고방법을 규정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mailto:국토교통부_부동산투자제도과) (전화: 044-201-3415, 팩스: 044-201-5538)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10.30.
~12.11.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국민의 투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일반의 청약의 정보공개 기간, 방법 등을 규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9681호, 2023. 08. 16. 공포, 2024. 02. 17. 시행)됨

이에 따라 청약에 대한 정보공개 기간 및 방법 등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리츠 공모 절차 규정 (안 제4조 신설)

- 리츠 공모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약 시 정보를 공시토록 하고 정보공개 내용, 기간 등을 규정

② 신용평가 제외 대상 위임 조문 수정 (안 제5조)

- 신용평가 대상을 규정하는 영 제29조제1항의 조문 개정에 따라 신용평가 제외 대상의 위임 근거 조문을 개정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mailto:국토교통부_부동산투자제도과) (전화: 044-201-3415, 팩스: 044-201-5538)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2023.10.30.
~11.20.

공정위는 2020년 6월 코로나19 비상시국 극복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규정된 대규모유통업자의 비용분담의무 예외사유인 자발성 요건과 차별성 요건을 완화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동 가이드라인은 한시적 운영을 예정하고 시행하였으나, 이후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의 요청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 기한을 연장해 옴('23.12월)

공정위는 그간의 가이드라인 운용 경과 등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현행 심사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발성 차별성 판단기준 완화 (안 제III조 제2항 라.호, 안 [별표1])**

-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에 규정된 예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봄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사은품 제공, 홍보비, 기타 판매촉진 행사비용의 분담 등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됨. 행사 참여에 대한 강요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판매촉진행사 시행 전까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구체적인 행사지원 내역, 내역별 예상지원 비용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http://www.ftc.go.kr) (전화: 044-200-4961, 팩스: 044-200-4979)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유통업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2023.10.30.
~11.20.

공정위는 2020년 6월 코로나19 비상시국 극복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규정된 대규모유통업자의 비용분담의무 예외사유인 자발성 요건과 차별성 요건을 완화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동 가이드라인은 한시적 운영을 예정하고 시행하였으나, 이후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의 요청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 기한을 연장해 옴('23.12월)

공정위는 그간의 가이드라인 운용 경과 등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현행 심사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발성·차별성 판단기준 완화 (안 제III조 제2항 다.호 (3)목 (마), 안 [별표1])

-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에 규정된 예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봄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사은품 제공, 홍보비, 기타 판매촉진 행사비용의 부담 등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됨. 행사 참여에 대한 강요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판매촉진행사 시행 전까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구체적인 행사지원 내역, 내역별 예상지원 비용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tel:044-200-4961) (전화: 044-200-4961, 팩스: 044-200-4979)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3-10-31 제출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서도 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 (안 제7조의2 신설)

-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② 상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 (안 제7조의3 신설)

-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③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 (안 제10조)

-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④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 (안 제24조제1항제2호)

-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⑤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 신설 (안 제29조제7호)

-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함

⑥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신설 (안 제81조제1항, 안 제81조제4항 신설)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신탁원부의 공시기능을 강화함

⑦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 (안 제101조)

- 등기관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2023-10-30 발의

현행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임직원 등에게 「상법」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여 주주들이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하게 임직원에게 대한 봉급 이외의 보상방법으로 회사가 무상으로 일정한 제한조건을 붙여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이나 이에 관해서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음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 방법·대상·한도 등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주식매수선택권과 마찬가지로 신고·공시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들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 방법, 부여 대상, 부여 수량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는 「상법」 개정과 병행하여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 시 신고 및 공시하도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주주들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165조의17제2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2023-10-31 발의

예금보험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금융시장의 위기 때마다 예금자 보호의 최후 보루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 합병 등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현재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현행법에서 한도를 금융업권 공통 0.5%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예금자보호법」 부칙은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한 내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1998년도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업권별 보험료율 한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예금자보호법」 부칙 규정의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행보다 낮은 보험료율로 환원되어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이는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으로 인해 현재 예금보험기금 적립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간 7천억원 수준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 부담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 상황도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보험료 수입 감소를 막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안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등 12인)

2023-10-30 발의

2023년 상반기 국경에서의 마약류 적발량이 과거 동기대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마약류 밀수 증가로 국가의 질서·안전과 국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외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국내 마약류 소매가격, SNS 등을 통한 음성거래 활성화 등 마약류 국내반입의 유인이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마약류 밀수방식의 지능화·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배송 일반화 등으로 마약류 밀수 단속·수사의 장애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에 대한 정보분석, 우범화물의 위치정보 활용 등 과학화된 마약류 밀수 단속·수사 기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마약류 밀수와 관련된 인적·물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 관세청장이 마약류 밀수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마약류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움

이에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마약류 등 우범화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안 제264조의11 신설)
-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사회안전·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반입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66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2023-11-01 발의

현행법은 무역금융 신청, 수출지원 사업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은행 등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수출입 기업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과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당사자 동의 기반 정보 제공’은 물론 ‘전송요구권’도 보장하여 정보 주체의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하여 수출입 기업 등 정보 주체가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납세자가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의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하도록 하는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무역컨설팅 서비스 활성화 등 물류 및 무역 분야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16조의6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2023-11-01 발의

현행법은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보세물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매알선 및 구매의 대가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종사원과 이들로부터 구매를 알선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송객수수료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면세점사업자 간 출혈경쟁으로 송객수수료가 2019년 1.3조원에서 2021년 3.9조원으로 급증하면서, 면세산업의 수익성 악화와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송객수수료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면세점사업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관광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관세청장이 면세점사업자에게 송객수수료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96조의3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2023-10-31 발의

현행법은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할 때 주택 등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 등 과세표준 금액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첩되는 부분인 과세 대상금액보다 과소하여 재산세 공제액이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주택 등의 과세대상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가 적절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6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2023-10-31 발의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정 부분을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상영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반기 기준 역대 2위의 흑자폭을 기록하고 있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음악콘텐츠에 대해서도 영상콘텐츠와 동일한 제작비용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 조정하고, 음반 및 음악영상물 등 음악 관련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영상콘텐츠와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8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2023-10-31 발의

현행법은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그 상속재산 가액에서 300억원 60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해당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제정되어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이므로,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와 공제금액을 상향하여 우수 기업의 지역 유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의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를 직전 3년 매출액 평균금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상향하고, 이 경우 공제금액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보다 상향하여 400억원 1,000억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2 및 제72조의2)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2023-11-01 발의

현행법은 국내개발자와 해외개발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내 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해외개발자 앱에 대해서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국내 개발자 앱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내 개발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협력 비용면에서 해외 개발자와 국내 개발자간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는 조세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외 개발자간 과세 형평 제고 및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체계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개발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오픈마켓이 앱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하여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3조의2제2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1인)

2023-11-03 발의

사물인터넷(IoT) 등장과 산업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디바이스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IoT·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하고자 함 (안 제17조제1항제1호 삭제)

또한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B2B 계약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등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안 제28조제7항 신설 등)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등 10인)

2023-11-02 발의

현행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물건의 수입, 배포 목적의 소지 등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 제공이나 파일 공유 등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체화하고,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하여 불법복제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124조, 제125조, 제133조 및 제137조 등)

문화체육
관광위원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

2023-11-02 발의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매년 3천 건이 넘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신고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게임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처리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5항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2023-10-30 발의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신산업 창출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7년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은 높은 매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발전과 혁신을 이끄는 주역으로 부상하였음

하지만, 현행법은 2007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벤처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어 장기적인 정책 추진과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2027년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현행 법 제16조에 따라 일부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휴·겸직을 통해 창업 및 벤처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과학기술분야와는 달리 관광, 문화 등 인문사회분야 연구원의 경우 휴·겸직을 통해 창업 및 벤처기업 임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실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제도 신설 (안 제3조의5)**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②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 목적의 휴·겸직 허용 대상 확대 (안 제16조)**

-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함

③ **법 유효기간 폐지 (부칙 제538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 삭제)**

- 안정적인 법적 기반 하에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정책을 추할 수 있도록 2027년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폐지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2023-10-30 발의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그러나 작업장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상급자 보고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의 사고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사업장의 경우 보안 및 업무 효율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생명·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목격한 근로자로 하여금 소방관서에 우선 신고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신체상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52조의2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

2023-11-01 발의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공정한 절차를 통해 유능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되, 공공기관 등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책무를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작 발주자의 책임을 규명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하여, 국토교통부의 발주자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의 책무를 의무적으로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에 대한 자료 및 시정조치 요구권, 벌칙 등을 마련함으로써,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6조의2제1항, 제2항·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11/09(화) 14:00	제410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 - 안건 심의

2. 상임(특별)위원회

구분		일시	내용
예결위	전체회의	11/6(월) 10:00	- 부별심사(경제부처)
	전체회의	11/7(화) 10:00	- 부별심사(비경제부처)
	전체회의	11/8(수) 10:00	- 부별심사(비경제부처)
	전체회의	11/9(목) 10:00	- 종합정책질의
	전체회의	11/10(금) 10:00	- 종합정책질의
법사위	예결소위	11/7(화) 10:00	- 예산안 등 심사
	예결소위	11/8(수) 10:00	- 예산안 등 심사
	전체회의	11/9(목) 10:00	- 예산안 등 의결
정무위	전체회의	11/9(목) 10:00	- 예산안 등 상정
기재위	전체회의	11/7(화) 10:00	- 2024년도 예산안 등 상정
	예결소위	11/8(수) 10:00	- 예산안 등 심사
	예결소위	11/9(목) 10:00	- 예산안 등 심사
	예결소위	11/10(금) 10:00	- 예산안 등 심사(필요시)
교육위	전체회의	11/8(수) 14:00	- 2024년도 예산안 등 상정
과방위	전체회의	11/7(화) 10:00	-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민) 인사청문회
	예결소위	11/9(목) 09:00	- 예산안 등 심사
	예결소위	11/10(금) 미정	- 예산안 등 심사
외통위	전체회의	11/9(목) 10:00	- 예산안 등 상정, 법안 상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1/6(월) 10:00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집중토론회 - 국정기조 대전환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	윤호중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11/6(월) 10:00	음식물쓰레기종량제 10년, 진단과 향후 방향 토론회	노웅래·이학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11/6(월) 10:30	장기요양시설 위탁급식 현황과 개선 방안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6(월) 11:00	사회적기업 혁신 : 민간주도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혁신 선언	박정·이학영· 김영진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6(월) 14:00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 추진 선포식 및 토론회	정우택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6(월) 14:00	경의중앙선 지하화 토론회	김용민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11/6(월) 14:00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국회토론회	김교홍·김철민· 이형석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실
	11/6(월) 14:00	오염된 땅에 새 옷을 입히다 세미나	엄태영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11/7(화) 10:00	IB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태규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11/7(화) 10:00	SK의 B.B.C.(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과 책임 경영의 시사점	김병욱·송기현· 유동수 의원실 등	국회본청 3식당 별실
	11/7(화) 10:00	경제민주화, 2023년의 현주소 - 황제보석 태광그룹을 통해 본 정경유착 유전무죄 실태	민병덕·박주민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7(화) 10:00	분권시대, 수자원 이용·관리의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토 론회	허영·엄태영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7(화) 13:00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송재호·이형석· 임호선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실
	11/7(화) 14:00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 - 일본의 경험과 교훈, 한국의 발전방안	이종성·신현영 의원실	의원회관 3간담회실
	11/7(화) 14:00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양경숙 의원실, 99상생연대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7(화) 14:00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공인 판로개척의 해법	최승재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7(화) 14:00	콜센터업 노임단가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	이용빈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실
	11/8(수) 14:00	바람직한 원외탕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토론회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1간담회실
	11/9(목) 08:00	제11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 구조적 저성장 앞날과 해법	홍성국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9(목) 10:00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정우택·김영주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11/10(금) 14:00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민관 정책 간담회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실
자료집 등	11/6(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2호 발간 -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원폭피해자 증언과 미래의 평화구축(Peacebuilding)	국회미래연구원	
	11/8(수)	「금주의 서평」 제652호 발간 - 도서명 : 다정한 조직이 살아남는다 - 저 자 : 엘라 F. 워싱턴	국회도서관	
	11/9(목)	「현안, 외국에선」 제70호(2023-20호) 발간 - 영국의 여성폭력 대책-문제 인식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11/9(목) 10:00	「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10(금)	「2024년도 중·장기 재정 현안 분석 - 인구위기 대응전략」 보고서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호 뉴스레터(제20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0/31(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34호(2023-22호) 발간 - 유럽연합(EU)의 「반도체법(Chips Act)」	국회도서관	
	11/1(수)	「금주의 서평」 제651호 발간 - 도서명 : 우울증은 어떻게 병이 되었나? - 저 자 : 기타나카 준코		
	11/2(목)	「World&Law」 제2023-20호 발간 - 늘어나는 고립인구,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면?		
	10/31(화)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I」 발간 -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1 -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2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II」 발간 - 2024년도 재정총량 분석1 - 2024년도 재정총량 분석2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III」 발간 - 1. 위원회별 분석(운영위, 법사위) - 2. 위원회별 분석(정무위) - 3. 위원회별 분석(기재위) - 4. 위원회별 분석(교육위, 문체위) - 5. 위원회별 분석(과방위) - 6. 위원회별 분석(외통위, 국방위) - 7. 위원회별 분석(행안위) - 8. 위원회별 분석(농해수위) - 9. 위원회별 분석(산자위) - 10. 위원회별 분석(복지위, 여성위) - 11. 위원회별 분석(환노위) - 12. 위원회별 분석(국토회)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IV」 발간 - 2024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V」 발간 -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VI」 발간 - 1.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 분석 - 2. 국고보조사업 분석 - 3. 재난정책보험 사업 분석		

	10/31(화)	「2023 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 발간		
	10/31(화)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 발간		
	10/31(화)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 발간		
	10/31(화)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 발간		
	11/1(수) 13:30	「초고령사회 대응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3(금) 09:30	「2023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의원회관 1소회의실
	10/30(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1호 발간 - 디지털제품여권 도입에 관한 미래전망 및 대응방안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0.30~11.05)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0/30(월)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10/30(월)	노동	동일한 업종이라도 근로자성 유무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
10/30(월)	기업지배구조	주주경영권분쟁팀 뉴스레터 - 1. 경영권 분쟁의 신호탄, 주주제안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10/31(화)	ESG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10/31(화)	지적재산권	NFT 프로젝트의 운영주체와 참여 아티스트를 상대로 한 화이트리스트(Whitelist) 대상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11/1(수)	중국	중국 <데이터 경외이전의 규범화와 촉진에 관한 규정(의견수렴안)> 공포 및 그 시사점
11/2(목)	통상관세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 논의 동향 및 시사점
11/2(목)	소송	지방보조금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기간, 범위 및 기타 제재 규정 등 구체화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백운일 | 전문위원

[이메일주소](#)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